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2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
김호진, 김화숙, 문병훈,
오한아, 이광호, 이영실,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서비스원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 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규정함 (안 제13조)
- 나.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.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사업연도)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③ 사회서비스원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3조(사업연도)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14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</u> <u>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</u> <p><u>③ 사회서비스원은 「서울특별시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3조 ~ 제17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5조 ~ 제19조 (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</u></p>